내부통제기준 전·후대비표

(2025.08.22)

항목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第44조 (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)	①회사는 임원(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,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(이하"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"이라 한다)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,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한다.	①회사는 임원(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,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(이하"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"이라 한다)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,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으로 대표이사,준법감시인,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로 지정한다.	추가
부칙		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	부칙 추가

※ [참고] 정보교류차단규정 제6조(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) (제정 21.06.30)

내부통제기준 제44조의 1항에서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은 대표이사,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로 한다.